거창군
Geochang County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제685호 2019. 2. 20.(수)

선결	기관의 장

고 시

거창군 고시 제2019-18호 거창군관리계획(교통시설 : 중로2-63호선외2)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2
거창군 고시 제2019-19호 도로명주소 고시 ····· 4

공 고

거창군 공고 제2019-190호 2019년 신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모집 공고 ····· 5
거창군 공고 제2019-192호 2019년 거창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시행 공고 ····· 11
거창군 공고 제2019-214호 전기사업 양수인가 공고 ····· 24
거창군 의회사무과 공고 제2019-5호 거창군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25
거창군 의화사무과 공고 제2019-6호 거창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38

회람									

발행 : 거창군 / 편집 : 기획예산담당관 (055-940-3043, 행정 3043)

거창군 고시 제2019 - 18호

거창군관리계획(교통시설 : 중로2-63호선외2)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거창군관리계획(교통시설:중로2-63호선외2)의 결정(변경)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경상남도 사무 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 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가능]는 거창군청 도시건축과(☎055-940-359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2월 20일

거 창 군 수

가. 거창군관리계획(교통시설:중로2-63호선외2) 결정(변경) 조서 : 붙임

나. 관계 도면 : 실음생략

거창군관리계획(교통시설:중로2-63호선외2) 결정(변경) 조서

1. 거창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1	51	20	주간선도로	505	중2-63	중1-52	일반도로	승강기농공단지	거고60호('11.8.25)	
변경	중로	1	51	20	주간선도로	502	중1-56	중1-52	일반도로	승강기농공단지	-	***선형변경 노선축소***
기정	중로	2	63	15	주간선도로	2,220	중2-17	중2-31	일반도로	남상무촌	거고43호('08.9.25)	지1084
변경	중로	1	56	22	주간선도로	1,300	중2-17	중로2-63	일반도로	남상무촌	-	***노선분리 폭원확장***
변경	중로	2	63	15	주간선도로	920	중로1-56	중2-31	일반도로	남상무촌	-	***노선축소***
기정	중로	3	63	12	주간선도로	945	중2-63	소1-32	일반도로	-	거고4호('17.1.11)	
변경	중로	3	63	12	주간선도로	945	중1-56	소1-32	일반도로	-	-	***가각변경***

■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1-51	중로1-51	•선형변경 및 노선축소 -폭원:20m -연장:505m→502m(감3m)	•승강기농공단지 진입로의 기개설 현황을 반영하여 선형을 일부 변경하고, 중로1-56호선의 노폭확장에 따라 노선을 축소 변경함
중로2-63	중로1-56	•노선분리 및 폭원확장 -폭원:15m→22m -연장:1,300m	•승강기농공단지의 접근성 개선 및 거창일반산업단지와의 연계성 확보를 위하여 일부 구간을 현재의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폭원을 확장 변경함
	중로2-63	•노선축소 -폭원:15m -연장:2,220m→920m(감1,300m)	·일부 구간 노폭 확장에 따라 잔여 노선을 분리 변경함
중로3-63	중로3-63	•가각변경 -폭원:12m -연장:945m	•중로2-63호선의 일부 구간 확폭에 따라 접속되는 시점부 가각을 변경함

거창군 고시 제2019 - 19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2. 20.

거창군수

○ 부여한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죽전4길 79-38 등 4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8조,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봉사실(☎055-940-3311~3)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별도붙임 도로명주소 고시 조서 1부. 끝.

거창군 공고 제2019-190호

2019년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모집 공고

산촌생태마을의 운영·관리 및 마을운영 업무를 지원함으로써 마을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2019년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를 아래와 같이 모집공고 합니다.

2019년 2월 13일

거 창 군 수

1. 모집분야 및 인원

○ 모집분야 : **고제면 탑선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 모집인원 : 1명

○ 업무내용

- 산촌생태마을의 운영·관리 및 시설물 관리와 마을사무 운영·관리 지원
- 산촌생태마을에서 생산된 청정 임산물의 유통 정보 수집, 대외홍보 및 도시 소비자와의 직거래 활성화 등 주민소득사업 지원
- 산촌 관광수요 증진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산촌체험시설 운영 지원
  - ▸ 체험·휴양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2. 신청자격

○ 채용공고일 현재 거창군 및 인근 시·군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로서 지정한 개소에 출근이 가능하며 상기 업무내용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

○ 동일한 조건인 경우 숲해설가·산림치유지도사·숲길체험지도사, 산림경영기사 등 산림관련 자격증소지자, 운영매니저 교육 이수자 등을 우선 채용

3. 근무조건 및 인부임 등

○ 근무기간 : 2019년 3월 ~ 12월

※ 예산 등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근무시간 : 1일 8시간(09:00~18:00), 주5일(월~금), 주40시간, 주,월차 지급

○ 인 부 임 : 66,800원/1일(교통·중식비 등 별도 부대비 포함)

○ 4대보험 의무 가입 : 국민연금, 산재·고용·건강보험

○ 4대 보험 적용에 따른 보험료 중 본인부담금은 임금에서 원천공제

○ 산촌생태마을은 사용자로서 운영매니저 4대 보험료 및 퇴직급여 충당금을 부담

○ 교육훈련 기간 중에도 임금은 동일하게 지급

4. 채용일정

○ **접수기간 : 2019. 2. 18.(월) ~ 2. 21.(목)**

- 원서교부 및 접수처 : 거창군청 산림과 공원녹지담당

※ 응시원서는 거창군청 홈페이지 (http://www.geochang.go.kr) 「고시·공고」 채용계획 공고문에 첨부되어 있음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근무시간 내 직접 제출**

○ 제1차 시험 : 서류심사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19. 2. 25.(월)** ※ 개별통보

○ 제2차 시험 : 면접시험(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며, 사정에 따라 생략 가능)

- **면접일자 : 2019. 2. 26.(화)** ※ 개별통보

○ 최종합격자 발표 : 2019. 2. 27.(수) ※ 개별통보

5. 제출서류

○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지원 신청서 1부.

○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

○ 채용신체검사서 1부.

○ 관련 증빙서류(학력, 자격증 등) 각 1부(대상자에 한함)

6. 기타사항

○ 채용일정은 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별도 통보합니다.

○ 분야별 세부 사항은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지원사업 운영지침(산림청)에 따라 추진하며, 그 외 사항은 거창군의 계획에 따릅니다.

○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합격 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류를 제출한 경우 근로조건 등 안내된 사항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함

○ 응시원서에 휴대폰 등 연락가능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산림과 공원녹지담당(☎055-940-338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3호 서식]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성 명		남, 여	생년월일	
주 소				증빙□
전화번호		휴대전화		
최종학력	학교(재학, 중퇴, 졸업), 전공 :			
자격·면허	1.			증빙□
	2.			증빙□
	3.			증빙□
경력사항	① ② ③			
자기소개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7조・제18조,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개인정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지방자치단체・마을이**(정보처리업무의 위탁기관을 포함)이** 자격조사, 부정・중복채용 방지, 사후관리 등을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사항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2항 및 제18조 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별지 제4호 서식]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직무수행계획서

<table>
<tr><td>①신청자</td><td colspan="3">(성명)　　(생년월일)</td></tr>
<tr><td>②채용희망마을</td><td colspan="3">시·군　　읍·면　　리　　마을</td></tr>
<tr><td>③주요 업무</td><td colspan="3"></td></tr>
<tr><td>④추진 목표</td><td colspan="3"></td></tr>
<tr><td>⑤직무수행계획
주요내용</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5">⑥직무수행계획</td><td>분기</td><td>분야별 직무수행 계획</td><td>비고</td></tr>
<tr><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r>
</table>

이상과 같이 2019년도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직무수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채용희망자용 : 뒷면>

※ 작성요령

① 신청자 : 신청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을 기재

② 채용희망마을 : 채용희망마을의 주소 및 마을명을 기재

③ 주요업무 : 운영매니저 직무수행시 담당업무(분야) 및 주요내용을 우선순위를 명시하여 기재

④ 추진목표 : 운영매니저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목표를 기재

⑤ 직무수행계획 주요내용 : 운영매니저 직무수행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기재

* 담당업무(분야) 작성예 : 마을 운영·관리 계획 및 실행, 마을 시설물 관리, 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마을 홍보·마케팅, 홈페이지 관리, 회계·고객 관리 등 마을사무관리, 마을축제 등 이벤트 운영 등

⑥ 직무수행계획 : 운영매니저 직무수행계획을 분기별로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재 (추진일정, 추진방법, 추진전략 등을 명시)

* 각 해당란에 기입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 첨부 가능

[거창군 공고 제2019-192호]

2019년 거창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시행 공고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행하는 「2019년 거창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공동주택단지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9년 2월 일

거 창 군 수

1. 사업개요

사 업 명	지원 근거	지원대상 단지	지원금액
2019년 거창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거창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사업승인대상(20세대이상) 공동주택단지	사업비의 50%이내, 1)세대규모별 지원한도내
2019년 거창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거창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20년 경과된 허가대상 (20세대 미만) 공동주택단지	2,000만원한도 (최대 50%)
2019년 공동주택활성화 지원사업	거창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300만원한도 (최대 50%)

2. 사업기간 : 2019. 3월 ~ 11월

3. 신청단지 자격

가. 거창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 사업승인대상(20세대이상) 공동주택단지(주상복합건축물 제외)

※ 단, 사업주체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정하며, 지원대상 시설물로서 같은 사항에 대해 지원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곳은 제외

나. 거창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 20년 경과된 허가대상(20세대 미만) 공동주택단지(주상복합건축물 제외)

1) ~100세대 : 2,000만원한도, 101세대 ~ 300세대 : 3,000만원 301세대 ~ : 5,000천만원

※ 석축, 옹벽, 절개지 등의 긴급 보수 또는 개방을 위한 담장 철거는 20년이 경과 되지 않은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신청 가능

다. 거창군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사업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150세대 이상)

※ 최근 3년내 사업 수혜공동주택단지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4. 지원내용

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조례 제4조)

○ 지원기준 : 보수(공사)비의 50% 보조금 지원

○ 지원내용 : 공동주택단지내 공공시설 보수비 지원

- 단지내 도로 및 가로등, 하수도시설,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물 관리

※ 시설물 신규 설치는 제외

나.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조례 제5조, 제6조)

○ 지원기준 : 보수(공사)비의 50% 보조금 지원(한도 20,000천원/단지)

○ 지원내용 : 공동주택단지내 공공시설 보수비 지원

- 단지내 도로, 주차장, 그 밖의 부지의 유지보수
- 보안등,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상·하수도, 담장, 조경시설 등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물 관리

※ 시설물 신규 설치는 제외

※ 경남도 소규모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병행 추진에 따라 사업기준 및 지원내용 등은 변경될 수 있음

다.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사업(조례 제5조, 제6조)

○ 지원기준 : 사업비의 50% 보조금 지원(한도 3,000천원/단지)

○ 지원내용

- 녹색생활 및 친환경사업 : 녹색장터, 벼룩시장, 알뜰장터 등
- 문화생활 : 북 카페, 취미교실 운영, 각종 문화강좌프로그램등
- 자원봉사사업 : 나눔봉사, 재능기부, 자원봉사캠프운영 등
- 육아·교육 및 기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불가 항목

- ◆ 시설비, 자산취득비, 수선비, 통신시설 설치비 등 자본적 경비
- ◆ 직원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비품 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등 운영비
- ◆ 이행보증보험료, 정산보고서용 책자 발간
- ◆ 지원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불우이웃돕기, 시상금, 수수료 등)
- ◆ 보조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단체소유 차량의 유지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 ◆ 보조사업 선정 주민(단체) 회원, 임직원의 회의 참석비
- ◆ 특정 정당지지, 특정 종교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한 활동

5. 신청방법

가. 신청 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2019. 3. 15일한

○ 접수장소 : 거창군청(도시건축과 건축행정담당)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접수

나. 신청서류

○ 보조금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 지원신청서상 구비서류(사업계획서, 입대의 의결서, 산출근거 등)

※ 관계법령 의무제출 서류 포함(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등)

6. 신청단지 심사 및 통보

가. 심사기준 및 방법

○ 지원 조례에 의한 지원기준 적합 여부

○ 담당부서에서 신청서류 1차 검토

○ 심의위원회(공동주택 및 지방보조금) 심의 후 대상단지 선정

나. 선정 결과 통보

○ 대상단지 선정 결과 및 보조금 교부 결정 개별 통보

7. 사업추진 절차 흐름도

군	⇒	공동주택→군	⇒	군	⇒	군	⇒	군→공동주택	⇒	공동주택	⇒	군
사업 공고		사업신청서 접수		심사 및 선정		대상자 확정		보조금 교부		사업 시행		사업평가 및 정산

8. 기타사항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결정 받은 단지는 보조금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 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게시되어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 건축행정담당 (☎055-940-360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공동주택관리 및 활성화사업 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2.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신청서

1. 신청인	공동주택 단 지 명		동 수	
	주 소		세 대 수	
	입주자대표회의 의 결 일		사용검사일 (준 공 일)	
2. 신청내용				
사 업 목 적 및 내 용				
사업예정기간				
총 사 업 비				
보조신청금액				
자 기 자 본 부 담 액				
그 밖에				

「거창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9년 월 일

신 청 인(관리주체) : **(인)**

확 인(입주자대표) : **(인)**

거 창 군 수 귀하

구비서류 : 입주자대표회의(또는 관리단) 의결서류, 사업계획서(사진포함), 사업비산출근거(설계내역서 등), 자기자본 부담능력 증빙서류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제출 서류(행위허가, 건축허가 등)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9년 거창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신청자의 자산총액 : 천원(자산액 천원, 부채액 천원)

□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 천원

□ 자체부담액 : 천원(부담자 성명 : , 부담방법)

□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 경비총액 : 천원

○ 사용방법 :

□ 보조사업 수행계획

(단위 : 천원)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 보조사업의 효과

○

○

□ 사업비 집행계획

가. 보조금 집행계획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나. 자부담 집행계획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 보조금, 자부담 구분 작성

<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 단위(세부)사업명을 기재
② 예산비목 :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교통비, 식비, 임차료 등으로 구분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산출기초의 원단위 절상)
④ 산출내역(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세목 기재방법 : 단가(원)×회(명, 부 등) = ○ ○ ○ 천원
· 산출내역(기초)작성이 어려울 경우 유사견적서 등 보조설명 자료 첨부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신청서

신청자	공동주택명		대 표 자 (전화번호)	
	주 소			
	동 수		사용승인일	
	세 대 수		관 리 단 의 결 일	

신 청 내 용

사 업 명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공사구분	사업의 내 용	소요경비 내역 (단위 : 천원)		
		계	보조금	자체부담액
계				

「거창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관리주체 대표 (인 또는 서명)

거창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관리단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설계서(견적서, 산출내역) 1부
4. 자기자본 부담능력 증명서류 1부
5. 관계법령 의무제출 서류(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등) 1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9년 거창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신청자의 자산총액 : 천원(자산액 천원, 부채액 천원)

□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 천원

□ 자체부담액 : 천원(부담자 성명 : , 부담방법)

□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 경비총액 : 천원

○ 사용방법 :

□ 보조사업 수행계획

(단위 : 천원)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 보조사업의 효과

○

○

□ 사업비 집행계획

가. 보조금 집행계획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나. 자부담 집행계획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 보조금, 자부담 구분 작성

<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 단위(세부)사업명을 기재
② 예산비목 :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교통비, 식비, 임차료 등으로 구분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산출기초의 원단위 절상)
④ 산출내역(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세목 기재방법 : 단가(원)×회(명, 부 등) = ○ ○ ○ 천원
· 산출내역(기초)작성이 어려울 경우 유사견적서 등 보조설명 자료 첨부
⑤ 관련사진 등

참고 **우선순위 선정기준**

○ 거창군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구 분	평가기준	기준 점수	평가 점수	비 고
합계		**100점**		
예 산 확 보 (10점)	자부담 확보(통장사본)	5점		
	자부담 확약서	5점		
사 업 내 용 (20점)	안전점검 결과 긴급보수사업	20점		
	조례에 명시된 사업	15점		
	기타 사업	10점		
최근 보조사업 지원여부 (30점)	최근 10년 초과 미지원	30점		
	최근 10년 이내 지원	20점		
	최근 7년 이내 지원	15점		
	최근 5년 이내 지원	10점		
	최근 3년 이내 지원	5점		
건 물 경 과 연 수 (20점)	20년 이상	20점		
	15년 이상~20년 미만	15점		
	10년 이상~15년 미만	10점		
	10년 미만	5점		
사업 시급성 (20점)	안전점검 결과 긴급보수사업	20점		
	시설물 긴급안전조치	15점		
	공용노후시설 개·보수	10점		

○ 거창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구 분	평가기준		기준 점수	평가 점수	비 고
합계			**100점**		
예 산 확 보	자부담 확보(통장사본)		10점		
	자부담 확약서		5점		
	소 계		**15점**		
사 업 내 용	안전점검 비용 (재능기부단 점검결과 긴급보수 포함)		10점		
	아파트 공용부분 유지관리		8점		
	부대복리시설 보수		6점		
	에너지절약설비 보수		4점		
	기타 사업		2점		
	소 계		**10점**		
아파트 규 모	세대수	20세대 이상	10점		
		20세대 미만	5점		
	전용 면적	40㎡미만 100%	15점		
		40~65㎡미만 50%미만	10점		
		65~85㎡이상	5점		
	소 계		**25점**		
경 과 연 수	30년 이상		30점		
	28년~30년 미만		25점		
	26년~28년 미만		20점		
	24년~26년 미만		15점		
	22년~24년미만		10점		
	20년~22년미만		5점		
	소 계		**30점**		
사업 시급성	안전점검 (재능기부단 점검결과 긴급보수 포함)		20점		
	시설물 긴급안전조치		18점		
	공용노후시설 개·보수		16점		
	부대복리시설 개·보수		14점		
	외벽도색		12점		
	시설 신규설치		10점		
	소 계		**20점**		

○ 거창군 공동주택활성화 지원사업

구 분	평가기준	기준 점수	평가 점수	비 고
합계		**100점**		
사업비 적정성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15점		
	사업비 항목의 적정성 (소모성경비, 운영비, 자본적경비 포함 여부)	5점		
	자부담확보 여부	5점		
	자부담 확약서	5점		
	소 계	**30점**		
사업 목적 적합성	공동체 형성 및 회복 기여도	20점		
	입주민 참여도	15점		
	입주민 편익 향상도	10점		
	소 계	**45점**		
사업계획 적정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10점		
	추진일정의 적정성	5점		
	사업추진의 파급효과	5점		
	소 계	**25점**		

거창군 공고 제2019-214호

전기사업 양수인가 공고

전기사업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사업(태양광발전)양수인가 신청을 수리하고, 같은 법 제10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 02. 18.

거 창 군

1. 공 고 명 : 전기(태양광발전)사업 양수 인가 공고
2. 공고기간 : 2019. 02. 18. ~ 2018. 03. 08.
3. 공고장소 :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4. 공고내용 : 전기(태양광발전)사업 양수인가 내역

   가. ㈜유성에너지 태양광발전소 ⇒ 유성에너지 태양광발전소

구분		양 도 인	양 수 인
태양광 발전사업 (거창군 제2017-144호/ 경남 제2017-320호)	발전소명	㈜유성에너지 태양광발전소	유성에너지 태양광발전소
	대 표 자	서 종 수	최 봉 연
	소 재 지	경남 거창군 주상면 주곡로 1065-57	
	설치장소	경남 거창군 주상면 연교리 788, 789(축사 위)	
	설비용량	475.2kW(사업허가 용량)	
	허가일자	2017. 10. 23.	
	양수(예정)일	2019. 02. 18.	

5. 양수내용 : 양도인의 전기사업(태양광발전 사업허가)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 양수. 끝.

거창군 의회사무과 공고 제2019-5호

거창군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규정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일

거창군의회 의장

1. 자치법규명: 「거창군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3대 이상 가족 모두가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는 분위기 조성을 위함.

3. 주요내용

가. 병역명문가를 정의함(안 제2조)

나.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 지원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다. 병역명문가에 대한 우대사항을 정함 (안 제6조)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2) 수승대관광지 시설이용료

3) 보건소 진료비

4) 문화예술 관람권 매년 4매

4. 입법예고기간 : 2019. 2. 14. ~ 2019. 2. 19.(5일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 2 19.(화)**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거창군의회(의회사무과)

○ 주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우) 50132

○ 전화 : 055)940-8063, FAX: 055)940-8059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2. 거창군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거창군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입법예고내용	의　　견	비 고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군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병역명문가”란 3대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서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서를 가지고 있는 가문을 말한다.

제3조(병역명문가 지원계획)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남지방병무청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3대 가족 중 한명 이상이 거창군(이하 “군”이라고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병역명문가에 적용한다.

제5조(예우·지원) ① 군수는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여 지역주민의 모범이 되고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시책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군이 주관하는 보훈관련 행사 등에 초청하여 의전상의 예우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우대) ① 군수는 병역명문가에 다음 각 호의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2. 수승대관광지 시설이용료
3. 보건소 진료비

② 군수는 병역명문가에 매년 문화예술 관람권 4장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확인) 병역명문가로 우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제2항제6호 병역명문가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자동차

②「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제3항제12호 병역명문가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③「거창군 보건기관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제2항제8호 병역명문가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6. (생 략)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지방재정법」

[시행 2019. 1. 17] [법률 제15803호, 2018. 10. 16, 일부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

[시행 2017. 11. 7.] [병무청훈령 제1482호, 2017. 11. 7.,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명문가 찾기 및 선양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등을 성실히 마쳐 제2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가문을 말한다.
2. "부상금"이란 병역명문가 표창심사위원회에서 표창대상으로 선정한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표창과 함께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3. "병역명문가 가족"이란 병역명문가 병역이행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4. "병역명문가 대표"란 병역명문가 신청서 제출 시 가문대표로 신청한 사람을 말한다.

제2조의2(병역명문가 선정대상 등) ① 병역명문가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3대가 모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는 경우에는 여성 1명이상 현역복무를 마친 가문을 포함한다.

1.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으로 입영하여 현역(전투·의무·해양경찰,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원, 상근예비역을 포함한다) 복무를 마쳤거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중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후 계속 복무중인 사람
2. 국민방위군, 학도의용군 등 군인이 아닌 신분으로 6·25 전쟁에 참전한 사람
3. 대한민국임시정부 하에서 조직된 '한국광복군'으로 활동한 사람

②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병역판정검사·입영 기피, 병역면탈 사실이 있거나 군인사법 제37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3조(사업계획의 수립 등) 병무청장은 선정기준 등을 명시한 병역명문가 선양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10일까지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장 병역명문가 신청 및 선정

제4조(병역명문가 신청) ① 병역명문가로 선정되기를 희망하는 가문은 신청기간 중 거주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한 병역명문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장교, 준사관,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을 마치고 계속 복무중인 사람은 해당 부대에서 의무복무기간을 명시한 복무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③ 6·25 전쟁에 참전한 사람, 한국광복군으로 활동한 사람은 국가보훈처 등 국가기관이 인정하여 발급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서의 접수 및 보완) ① 지방병무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를 받은 때에는 병역명문가 접수 및 처리대장(별지제2호서식)에 기록하고 접수증(별지제3호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한 신청서류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신청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자가 보완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6조(병역사항의 확인) ① 지방병무청장은 신청서와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대조하여 가문별 병역이행자 명단(별지제4호서식)을 작성하고, 병적기록에 의하여 전 가족에 대한 군별, 군번, 계급, 입영일, 전역일 등 병역사항을 확인·기재하고, 제2조의2제2항에서 정한 선정 제외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병적기록만으로 병역사항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각 군에 조회하고, 필요한 경우 신청자로부터 참고자료 등을 추가로 제출받을 수 있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사항 확인 지연 등으로 당해 년도에 병역명문가로 선정되지 못한 가문은 다음 년도 선정대상으로 관리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병역명문가 선정 등) 지방병무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병역명문가 선양사업계획에 따라 병역명문가를 선정한 때에는 명문가 친족 계보도(별표 1), 병역명문가 대표자 명단(별지제5호서식), 가문별 병역이행자 명단(별지제4호서식)등을 매년 2월 2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신청결과 안내) 지방병무청장은 신청가문 중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에 대하여는 선정결과와 표창을 위한 심사절차를 통보하고, 선정되지 아니한 가문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9조(업무분장) 병역명문가 선정을 위한 지방병무청(병무지청)의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민원실 소관부서(「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병역명문가 신청서의 접수·확인
2. 운영지원과장: 병역명문가 선정 및 결과보고 등 관련 문서 관리

제10조(문서 관리) 지방병무청장은 접수된 신청서와 가문별 병역이행자 명단,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개인별 병적조회(확인)서 등을 가문별로 편철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전산정리)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 가문별 이행자, 우대기관 및 행사 참여 희망자 등을 병역명문가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병역명문가 표창심사위원회

제11조(설치) 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의 표창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병무청에 병역명문가 표창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병무청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의 외부인사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혁신행정담당관실 선임사무관이 된다.

제1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표창 심사 기준
2. 삭제 <'08.12.12>
3. 표창대상가문의 선정
4. 기타 표창 수여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에 대한 표창심사 시 여성의 군복무 사항을 반영할 수 있다.
제14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표창

제15조(주관) 혁신행정담당관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정부포상을 추진한다.
제16조(표창 및 부상금) ① 병역명문가 표창등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 상: 대통령상
2. 금 상: 국무총리상
3. 은 상: 국방부장관상
4. 동 상: 병무청장상
② 삭제 <'08.12.12>
③ 제1항에 따른 표창대상 명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선양 및 홍보

제17조(병역명문가의 전당 운영) ① 혁신행정담당관은 병무청 홈페이지에 "병역명문가의 전당"을 개설하고,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을 연도별로 게시하고, 이를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 삭제 <'06.10.12>
제18조(병역명문가 인증서 및 병역명문가증발급) ① 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에게 병역명문가증서(별지 제6호서식) 및 병역명문가증(별표 2)을 발급하고 병역명문가 증서대장(별지 제7호서식)과 병역명문가증 발급(수불)대장(별지 제8호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병무청장은 분실 또는 훼손 등의 사유로 병역명문가증 재발급을 원할 경우 병역명문가증 재발급 신청서(별지 제9호서식)를 제출받아 재발급한다.
③ 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의 병역이행자가 영문으로 병역명문가 증서 발급을 원할 경우에는 영문증서(별지 제6호의2서식)를 발급하고 병역명문가 영문증서 발급대장(별지12호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④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의 병역이행자가 취업 추천서 발급을 원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하여 취업 추천서(별지 제10호서식)를 발급하고 병역명문가 취업추천서 발급대장(별지12호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8조의2(병역명문가 대표의 변경) ① 병역명문가 대표가 사망하거나 국외로 이주하는 등의 사유로 병역명문가 대표 변경을 원하는 가문은 병역명문가 대표 변경신청서(별지 제13호서식)를 병역명문가 신청서를 접수하였던 지방병무청장

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병역명문가 대표 변경 신청서를 접수한 지방병무청장은 사실 확인 후 병역명문가 대표를 변경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하며, 병역명문가 관리시스템 자료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19조(홍보) 혁신행정담당관은 병역명문가 찾기 및 선양사업 홍보를 주관하고, 지방병무청장은 현수막 게시 등 지방청 자체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병역명문가 우대)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 가족을 기념식 등 행사에 초청하거나 병무행정발전 정책자문위원 등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민간업체의 장에게 그 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이용료 할인이나 우대 등에 필요한 지원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주차장법」
[시행 2019. 1. 19] [법률 제16005호, 2018. 12. 18, 일부개정]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이하 이들을 합하여 "노상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그 이용시간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차요금의 4배 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인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이나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이하 "주차요금등"이라 한다)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주차요금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⑤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인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주차요금등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한 주차요금등의 징수를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징수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제4항에 준하여 그 주차요금등을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13조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이하 "노외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개정 2016. 1. 19.>
③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인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제15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 주차요금등을 강제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6. 1. 19.>

□「관광진흥법」
[시행 2019. 1. 1] [법률 제15860호, 2018. 12. 11, 일부개정]
제67조(입장료 등의 징수와 사용) ①관광지등에서 조성사업을 하거나 건축, 그 밖의 시설을 한 자는 관광지등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고, 관광시설을 관람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관람료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입장료·관람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 대상의 범위와 그 금액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다.
③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입장료·관람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하면 이를 관광지등의 보존·관리와 그 개발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여야 한다.

□「지역보건법」
[시행 2017. 9. 19] [법률 제14895호, 2017. 9. 19, 일부개정]
제25조(수수료 등) ① 지역보건의료기관은 그 시설을 이용한 자,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 또는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18. 12. 20] [보건복지부령 제604호, 2018. 12. 20, 타법개정]
제10조(수수료 등)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와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 명세의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요금의 감면) ① 노상 및 직영노외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차량
3. 성실납세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기여한 공로로 모범납세 표창을 받은 자의 소유차량으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성실납세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다만, 스티커 교부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차량에 한정한다.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서 규정한 적용대상 국가유공자의 자가운전 자동차,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

조에서 규정한 적용대상 참전유공자의 자가운전 자동차
5.「거창군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 본인 소유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② 노상 및 직영노외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한 주차요금의 2분의 1을 감경한다.
1. 장애인 자가운전 자동차 및 장애인을 동반한 승용자동차
2. 승용차 10부제 참여를 위해 1일 회수권을 이용하는 자동차
3. 배기량 1,000시시 미만 자동차(경형자동차)
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다만, 전기자동차는 충전목적으로 충전시설에 주차하는 경우 요금 면제)
5. 경남i다누리카드를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제5조(시설이용료 감면) ① 주차장 이용료 감면은 「거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제9조에 따르되, 관광지에 거주하는 사람의 소유차량과 관광지 활성화 등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도 면제할 수 있다.
② 축제극장을 이용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제극장 이용료를 면제한다.
1. 거창국제연극제 준비, 행사개최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공공목적 등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썰매장, 야영장, 오토캠핑장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7.「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인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8.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
9.「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10.「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11.「주민등록법」상 25세 미만 미혼자녀를 셋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가정
④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감면 대상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하고 감면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하나만 적용한다.

□ 「거창군 보건기관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제6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게는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② 보건소장이 공공보건시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보건기관에 내소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진료비를 면제한다. 이 경우 면제하는 진료비는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4.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6.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인 자
7. 「거창군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1. 공공기관이 공무상 필요에 따라 실험·검사 등을 공문서로 의뢰할 경우
2.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수수료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거창군 의회사무과 공고 제2019-6호

거창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규정 및「거창군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일

거창군의회 의장

1. 자치법규명 :「거창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고령운전자 용어 정의 추가 (안 제2조 3호)

나.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등 지원(안 제9조 3항)

4. 입법예고기간 : 2019. 2. 14. ~ 2019. 2. 19.(5일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 2. 19.(화)**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거창군의회(의회사무과)

○ 주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우) 50132

○ 전화 : 055)940-8063, FAX: 055)940-8059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2. 거창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거창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입법예고내용	의　　견	비 고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를 “거창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 증진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고령운전자” 란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운전면허를 소지한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군수는 고령운전자가「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고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10만원 이내의 교통비 지원 등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혜택을 제공할 수 있고,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임을 표시하는 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거창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거창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 증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거창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교통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 략)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고령운전자” 란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운전면허를 소지한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제9조(재정지원 등) ①~② (생략)	제9조(재정지원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고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10만원 이내의 교통비 지원 등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혜택을 제공할 수 있고,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임을 표시하는 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관련법령 발췌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 제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2.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을 2회 이상 위반(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호에서 같다)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3. 제4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5.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 위험행위를 한 경우

5의2.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난폭운전을 한 경우

6.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7. 제8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에 해당된 경우
8. 제82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운전면허효력의 정지기간 중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드러난 경우
9. 제87조제2항 또는 제88조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적성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10.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10의2.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 제258조의2(특

수상해)·제261조(특수폭행)·제284조(특수협박) 또는 제369조(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1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죄를 범한 경우

가. 「국가보안법」 중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 및 같은 법 제12조 중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죄

나. 「형법」 중 다음 어느 하나의 범죄

1) 살인·사체유기 또는 방화

2) 강도·강간 또는 강제추행

3) 약취·유인 또는 감금

4) 상습절도(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경우에 한정한다)

5) 교통방해(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써 위반한 경우에 한정한다)

12.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

13. 다른 사람이 부정하게 운전면허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제83조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에 대신 응시한 경우

14. 이 법에 따른 교통단속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등 및 시·군공무원을 폭행한 경우

15. 운전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운전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빌려서 사용한 경우

16.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운전한 경우

17. 제1종 보통면허 및 제2종 보통면허를 받기 전에 연습운전면허의 취소 사유가 있었던 경우

18.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요청한 경우

18의2. 제39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화물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19.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20.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失效)시킬 목적으로 지방경찰청장에게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경우. 다만, 실효시키려는 운전면허가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의 대상이거나 효력정지 기간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하려고 할 때 그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벌점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일정한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③ 지방경찰청장은 연습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이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연습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에게 귀책사유(歸責事由)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하려고 하거나 제3항에 따라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하려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의 당사자에게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 등을 통지하여야 하며, 그 처분을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의 이유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87조제2항 또는 제88조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려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의 당사자에게 적성검사를 할 수 있는 날의 만료일 전까지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실의 조건부 통지를 함으로써 처분의 사전 및 사후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